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304호, 2023. 3. 28. 공포, 9. 29. 시행)됨에 따라,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의 지급제한, 구상권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정하고,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정하며,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자료제공 요청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26. ~ 2023. 2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공단,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
2. 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
3.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
4.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(지원금액 지급결정

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
2.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

## 부 칙

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19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 공단,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</u></li> <li>2. <u>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</u></li> <li>3. <u>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</u></li> <li>4. <u>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</u></li> </ol>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(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2.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64